

#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장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 . .

발 의 자 : 장미경 의원(1인)

찬 성 자 : 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  
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상호  
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  
허민근 의원(13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6조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 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7)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

나. 부서검토: 교육청소년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5월 셋째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

2.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청소년의 교육·문화·예술·체육·자치활동 등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5. 모범 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6. 지역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행사
7.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주간동안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우수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종전의 다른 조례인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

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청소년의 달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체육·문화·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지원에 관한 행사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조 례 명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 주요 사항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행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성장 지원에 기여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 : 청소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재정의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움

### 4.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김진수(☎054-480-2722)